제 4 장　원산지제도

제 1 절　국내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수출입과 주무관 정경란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적극 채택함에 따라 특히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원산지 제도의 개선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 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에는 “Made In Korea 제도”의 도입을 추진, 기초 작업으로 대

외무역법 제24조의2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국내산 제품이 일정 기준 이상의 국산 원자재·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만 한국산임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규정이 수출입 물품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저질의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한(“재단기준”) 의류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봉제공정 수행국으로(“봉제기준”) 개정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전 재단기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채택되어 왔으나,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권역에서 채택하는 봉제기준과 배치되고 주된 봉제공정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 재단하고 해외에서 봉제하여 완성하는 의류제품의 경우, 재단기준에 의하여 간단한 재단공정만으로 국내산임을 인정받게 되어 순수한 국내생산제품과 구별이 되지 않아 소비자와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류원산지기준 개정이 국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봉제기준으로의 변경 시 의류봉제 업계에서는 연간 약 4.7%(3,525억원)의 생산 증가를 보이고 이는 12,000명 규모의 신규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봉제기준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내 섬유산업의 공동화 현상의 완화 등이 기대된다.

3. 향후 과제

2004년에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Made In Korea 제도 적용의 필요성을 품목별로 검토하여 저개발국 부품과 국내산 부품이 경쟁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 2 절 WTO 통일 원산지 협상

수출입과 사무관 송현민

1. 통일원산지 협상 배경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원료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과 제품의 글로벌 생산체제(Global Manufacturing System)를 적극 활용하는 세계화된 경제일수록 원산지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간 관세감면을 위한 특혜를 제외한 비특혜 분야에 적용된다.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다양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2. WTO 통일원산지 협상 현황 및 성과

가. WTO 통일원산지 규정 협상 메커니즘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 결과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월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였다. '02. 7월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94개 핵심정책쟁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94개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에 대하여는 회원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원산지위원회 비공식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나.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구조

⑴ 통일원산지규정 총칙(Overall Architecture)

총칙은 전체 6개 조항을 통해 주요 용어의 정의, 통일 원산지규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록 1에서는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록 2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것과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정한다. 무엇이 실질적 변형인가에 관하여 세번변경 기준(Traiff Shift Rules)을 원칙으로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또는 특정공정 기준(Specific Process Rules)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지만 때론 3가지 기준을 각각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⑵ 품목별 원산지규정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다음에 품목별 원산지 규정으로서 HS 품목번호에 따라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 원산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분야이다. '95년부터 시작된 협상이지만 각국 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작업량도 방대하여 현재 총486개 쟁점 중 71.6%만 타결되고 138개 쟁점이 미결상태이다.

다. 2003년도에 다루어진 주요쟁점 사례

(1)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Implication Issue)

통일원산지규정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WTO 위원회나 각 회원국들이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협상 타결이 임박해지자 협상결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EU, 브라질, 인도 등 다수국가들은 이 협상결과가 다른 WTO 협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UR 각료회의 결과 채택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의 내용을 산하 원산지위원회가 해석상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미국, 캐나다는 통일원산지 규정과 다른 WTO 협정과의 연결고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각종 무역조치에 원산지 규정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고, 실제 반덤핑 제도 등에 원산지 규정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반덤핑 위원회 등 다른 WTO 위원회에서 통일원산지협상의 논의동향을 알지 못한다는 현실적 인식에 근거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WTO 사무국은 통일원산지 규정의 유일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강조한 다음과 같은 의장권고안을 제시하여 각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①통일원산지규정은 현재 원산지 규정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무역정책수단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②다른 WTO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회원국들은 그들의 무역정책 수단에 원산지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통일원산지 규정이 다른 WTO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원산지 기준을 사용되고 있는 협정에만 적용되며, 각국은 자국의 무역정책수단에 원산지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나 이러한 결정권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다른 WTO 위원회에서 통일원산지규정의 사용을 결정하는 경우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이러한 의장권고안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표현하는 일반양해(General Understanding)을 제시하여 대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유보한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임플리케이션 이슈는 미국의 수용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⑵ 직물의 염색 및 날염(Dyeing & Printing Fabrics)

면직물에 색깔을 넣거나 아름답게 디자인된 문양을 찍어 염색 및 날염 직물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가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인지 직물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EU, 호주, 스위스, 우리나라 등 14개국은 염색 및 날염공정 전후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공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염색과 날염공정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등 8개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염색 및 날염이후 두 가지 이상의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협상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다수의견인 조건부 원산지 입장을 의장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⑶ 철강의 코팅(Coating of Steel Products)

열연·냉연강판에 주석이나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플라스틱 등으로 색깔을 입히는 경우 원산지가 코팅공정 수행국인지 강판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EU, 브라질, 스위스, 우리나라 등 15개국은 철강의 코팅공정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본은 석도강판(1차코팅) 생산까지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는 칼라강판(2차코팅) 생산에도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집트는 이 공정에 원산지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의장 권고안 제시를 유보한 상황이다.

⑷ 기계류의 조립공정(Assembly of Machinery)

부품을 가지고 일반 기계류를 조립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 또는 특정 가공공정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여 판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5개국은 세번변경 기준(HS 4단위 또는 6단위 변경 등) 또는 특정공정 기준(5부품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EU, 브라질, 이집트, 터키는 부가가치 기준(45% 또는 60%)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미국과 EU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WTO 사무국은 미국과 EU의 주장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은 의장 권고안을 제시하여 각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①다른 4단위 세번에 속하는 물품에서 부품을 만든 경우 HS 4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부여한다. ②동일한 4단위 세번에 속하는 부품으로부터 부품을 만든 경우 5부품 기준(Five Parts Rule) 또는 40%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부여한다. ③부품에서 기계를 만든 경우 상황에 따라 HS 4단위 변경 또는 6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부여한다. ④동일한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에 속하는 기계로부터 기계를 만든 경우 40%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부여한다.

⑸ 엔진을 장착한 새시에서 완성차 조립(Assembly of Vehicles)

엔진이 장착된 새시(Chassis)에 차체(Body)를 추가로 조립하여 완성차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가 조립국인지 엔진 장착국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6개국은 엔진을 장착한 새시에 완성차를 조립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EU, 브라질, 터키, 인도는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부여를 반대하나, 소방차 등 특장차의 경우 특수한 용도가 있는 차체의 장착을 통해 차량의 용도가 결정되므로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TO 사무국은 이 쟁점이 기계류 쟁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기계류 쟁점 타결시까지 의장 권고안을 유보하였다.

⑹ 가공갑피에서 신발생산(Production of Footwear)

일반 갑피를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가 부여되나, 안창과 갑피가 붙은 가공갑피(Formed Upper)를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가 신발 조립국인지 가공갑피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은 신발을 조립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우리나라 등 11개국은 이 공정에 원산지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원산지 불인정을 의장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

⑺ 가축의 도축공정(Slaughtering of Live Animals)

생우를 도축하여 육류형태로 교역하는 경우 도축한 나라가 원산지인지 사육한 나라가 원산지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은 도축국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도축 기준국을 주장하고 있으며, EU, 일본, 이집트, 우리나라 등 11개국은 4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는 사육 기준국을 주장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도축 기준국을 의장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

⑻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Origin of Fish)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안에서 12해리 내에 있는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연안국에, 200해리 밖의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선박기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영해 밖 공해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가 선박기국인지 연안국인지에 대하여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노르웨이, 우리나라 등 10개국은 선박기국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인도, 에쿠아도르는 연안국에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WTO 사무국은 아직 의장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3. 향후 WTO 통일원산지협상 전망

통일원산지 협상은 협상시한이 계속 연장되었는데 일반이사회에 상정된 총94개 핵심정책이슈는 '04. 7. 31가 작업기한이다.

지금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는 가운데, 94개 쟁점 하나 하나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 워낙 첨예하여 협상 시한내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의장과 WTO 사무국은 이번에도 협상시한을 넘긴다면 지난 9년간 끌어온 협상의 모멘텀이 급속히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 타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을 도입하여 통일원산지규정이 타결되더라도 각국이 기존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각국의 사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정도의 적용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을 두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메뉴접근법(Menu Approach)의 아이디어도 제시된 상황이다. 이는 특정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여 두 가지로 갈리고 각국이 양보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기준을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보다 두 가지 모두를 그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정하고, 각국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그 선택한 내용을 WTO에 통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협상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제 3 절 FTA 원산지 협상

전략물자관리과 사무관 윤정원

1. FTA 원산지 협상의 의의

최근 다자간·양자간 국제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이 협상의 중요부분으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이며 다른 하나의 흐름이 양자간 FTA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이다.

FTA협상은 어느 정도까지 공정을 수행해야 무관세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을 말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양허안 협상을 통해 무세화 물품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원산지 협상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칠레 FTA 양허안 협상을 통해서 철강시장 개방을 해도 원산지 규정제정 협상에서 열연강판을 냉연강판으로 만드는 공정에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열연강판을 수입, 우리나라에서 만든 냉연강판은 원산지가 일본이 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FTA 체결의 의미가 반감된다.

2. 한·일 FTA 원산지 협상

한국과 일본 양국은 2003.10.20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정상회담에서 2005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여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3. 12. 22(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체제 및 협상일정 등 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양국은 매 2개월 간격으로 양국을 번갈아 가며 협상을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2004.2.23(월)-25(수)간 동경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글로벌 아웃소싱을 강화해 왔고, 동남아와 중국 등 생산단가가 싼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많이 실시해온 일본은 강도 높은 원산지 규정의 도입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내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제공을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유리하다.

원산지 규정은 역내산 제품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무역굴절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지나치게 강한 규정이 도입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원산지 규정의 수준에 따라 역내 기업이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투자 계획과 부품조달방법 등을 조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일 FTA의 경우 역내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전후방 파급효과를 고려한 후)만이 관세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여 제3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한·일 양국 기업이 다양하고 복잡한 부품공급 네트워크로부터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원산지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3.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협상

한·싱가포르 양국은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산·관·학 FTA공동연구회를 개최한데 이어 2003년 10월 싱가포르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1.27.(화) - 1.29.(목)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싱가포르와의 원산지협상에서는 제조업분야에서 우회수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특혜원산지 규정을 다소 엄격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여러 국가들의 원산지 협상안을 보면 원칙적인 세번변경 기준 외에 '부가가치' 기준에 입각한 특혜원산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강조는 싱가폴이 'Outward Processing'이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생산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Outward Processing이란 싱가포르와 제3국간에 제품의

부품을 끊임없이 운송하여(shuttling) 완성품을 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에 따르면, 부품이 싱가포르 내에서 생산된 후 제3국으로 운송되어 제3국에서 조립되어 완성된 후 다시 싱가포르에 운송되어 검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번변경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싱가포르의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의 병행을 인정하되 그 인정 수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FTA 원산지 규정은 양국간의 산업경쟁력 수준, 교역규모를 기초로 수출활성화, 투자촉진, 우회수입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한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를 각기 최대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검토하고 반영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양국간의 산업경쟁력 수준과 교역규모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역활성화 대상 품목은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우회수입방지나 투자유치 필요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는 일본과 싱가포르와의 특혜 원산지 기준을 협상함에 있어 WTO 비특혜 원산지 기준과 다른 기존 FTA(한·칠레, 일·싱, 미·싱 등) 원산지 기준 등을 각각 검토하여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우리 산업에 가장 유리한 기준을 품목별로 정하고 협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이외에 기업과 경제단체, 학계, 연구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